

- 2025년도 제3회 -

울산시설공단 신규직원 채용 공고

[기록물 · 기계 · 통신 · 조경 · 영선]

‘미래가치를 더 높이는 시민의 공기업’ 울산시설공단과 함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도전적이고 역량있는 인재를 직무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 11. 10.

울 산 시 설 공 단 이 사 장

1

모집분야별 직무내용

직종	직군	직렬	직급	인원	직무내용(담당업무)
계				9명	
일반직	행정	기록물	7급	1명	▶ 기록물관리업무 전반 (※기록물 전담부서 배치 시) ▶ 일반행정(기획, 총무 등 공단 운영전반)
	기술	기계	7급	5명	▶ 기계분야 시설관리업무 전반 (냉동공조·소방기계설비 관리·공사, 유지보수, 법적점검 등)
		통신	7급	1명	▶ 통신분야 시설관리업무 전반 (통신/방송설비 관리·공사, 서버·네트워크 관리, 보안업무 등)
업무직	업무	조경	-	1명	▶ 조경수목, 녹지, 잔디, 초화류 등 관리 및 기계장비 운영·관리 등 조경분야 유지업무 전반
		영선	-	1명	▶ 건축·시설물 내외부 보수(수리) 및 유지·관리업무 전반

※ 상세 직무내용은 [붙임] 모집분야별 직무기술서 참고

2

채용절차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인성검사 ➡ 체력검정 ➡ 면접시험 ➡ 결격조회(확인) ➡ 임용

※ 인성검사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체력검정은 업무직(조경, 영선) 응시자 중 필기시험 합격한 자에 한함.

3

시험방법

구분	주요내용(선발기준)	비고
서류심사	응시적격(지역, 자격 등) 여부만 심사	서류 작성의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필기시험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는 전원 필기시험 기회 부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인성검사	성실성, 협업능력, 윤리성, 정직성, 책임감, 도전 정신 등 평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체력검정	현장업무 수행 가능한 최소 체력을 검정	일부 직렬에 한하여 실시 [업무직(조경, 영선)]
면접시험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평가	서류·필기·체력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세부 시험내용

서류심사(1차)

직종	직군	직렬	직급	서류심사 방법	비고
일반직	행정	기록물	7급	▶ 응시자격(거주지, 자격증, 최종학력 등) 적격여부만 심사	※ [참고] 6.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기술	기계	7급		
		통신	7급		
업무직	업무	조경	-		
		영선	-		
시험진행		▶전형위원 : 3명(외부위원2, 내부위원1) ▶전형방법 : (공통)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증빙자료(초본, 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필히 등록
(누락 및 확인불가 시 서류심사 탈락)

필기시험(2차)

직종	직군	직렬	직급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 시간	비고
				공통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 과목	논술 과목			
일반직	행정	기록물	7급		· 해당없음	· 직무수행 능력 및 지식수준, 발전방안 등	70문제	120분	<공통전공> 객관식 4지선다 <논술> 서술식
	기술	기계	7급	· 의사소통능력 · 수리능력 · 문제해결능력 · 자원관리능력	· 기계공학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등)		<공통> 35문제 <전공> 35문제 <논술> 2문제		
		통신	7급		· 정보통신개론, 무선통신개론 등				
업무직	업무	조경	-	· 조직이해능력 · 직업윤리능력	-		<공통> 40문제 <논술> 2문제	90분	
		영선	-						
합격 기준	일반직	(공통·전공)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매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적용한 고득점자 순						논술시험은 면접전형 시 평가자료로 활용 (필기시험 합격기준 제외)	
	업무직	(공통)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적용한 고득점자 순							

인성검사

검사대상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평가항목	▶성실성, 협업능력, 윤리성, 정직성, 책임감, 도전 정신 등 평가
검사진행	▶온라인 사이트 접속 후 개별 인성검사 실시(25분 정도 소요)
결과활용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합격여부 해당 없음)

체력검정(3차)

시험대상	▶업무직(조경,영선) 지원자 중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평가항목	종목	악력	교차윗몸 일으키기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	중량주머니 들고 앉아 일어서기	제자리 멀리뛰기
	제한시간(기회)	좌우 각2회	1분	3회	2분	3회
	통과 기준	남 35kg 여 20kg	25회 11회	1.6cm이상 7.7cm이상	20회(20kg) 10회(10kg)	1.5m 1.2m
시험진행	▶외부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 실시 ▶시험순서 : 악력 ➡ 교차 윗몸일으키기 ➡ 앉아 윗몸 앞으로굽히기 ➡ 중량주머니 들고 앉아 일어서기 ➡ 제자리 멀리뛰기					
합격기준	▶5개영역 모두 해당기준을 통과해야 합격 / 검정현장에서 합격·불합격 판정					

면접시험(4차)

면접 시험 대상 선발 배수	직종	직군	직렬	직급	채용인원	선발배수	선발인원	비고
	일반직	행정	기록물	7급	1명	5배수	5명	
		기술	기계	7급	5명	3배수	15명	
			통신	7급	1명	5배수	5명	
	업무직	업무	조경	-	1명	5배수	5명	
			영선	-	1명	5배수	5명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합격 기준

- ▶면접시험관별 채점 점수 평균이 15점이상(25점 만점 기준)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시험관 과반수가 "미흡(2점)"이하 평정시 불합격
- ▶동점자 발생시 우선 순위
 - ①취업지원대상자 ②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자 ③면접결과 미흡 평정이 적은 자

5

모집일정

연번	주요내용	모집일정	비고
1	· 응시원서 접수	· 2025.11.13.(목)~11.20.(목)	· 8일간
2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실시 공고	· 2025.11.24.(월)	· 공단 홈페이지
3	· 필기시험	· 2025.11.29.(토) 10:00 ~	· 장소 추후 공고
4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인성검사 안내) 및 면접(체력)시험 실시 공고	· 2025.12.2.(화)	· 공단 홈페이지
5	· 인성검사	· 2025.12.3.(수) 09:00~18:00	
6	·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 2025.12.5.(금) 10:00~	· 일정(장소) 추후 공고
7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5.12.8.(월)	· 공단 홈페이지
8	· 응시증빙서류 징구(결격 조회 등)	· 2025.12.9.(화)~12.10.(수)	
9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12.19.(금)	· 공단 홈페이지
10	· 임용예정일	· 2026.1.5.(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의 7일 전에 변경 공고합니다.

공통사항

구분	주요내용	비고
응시연령	▶(공통) 18세 이상(2008.1.5. 이전 출생자)이며, 공단 정년(만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적용기준일 : 임용 예정일)	
주소지 (최종학력 소재지)	▶ 지역제한 : 아래 요건(① 또는 ②)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채용공고일 전일(2025.11.9.)부터 최종 합격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자로, 이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② 울산광역시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자 ※ 단, 행정(기록물) 및 기술(기계)은 지역제한 해당없음	
일반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 결격사유	▶ 공단「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분야별 별도자격

직종	직군	직렬(직급)	자격기준
일반직	행정	기록물 (7급)	▶(필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자격증을 발급하여 공고일 전일 현재 소지중인 자(발급일이 공고일 이전 인정)
	기술	기계 (7급)	▶ (필수) 다음 중 하나 이상 자격에 해당되는 자 - 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배관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 대기환경기사, 가스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통신 (7급)	▶(필수) 다음 중 하나 이상 자격에 해당되는 자 - 정보통신기술사,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업무직	업무	조경	▶ (필수) 다음 중 하나 이상 자격에 해당되는 자 - 조경기술사, 농화학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종자기술사, 산림기술사, 산림기능장, 조경기사, 시설원예기사, 유기농업기사, 종자기사, 화훼장식기사, 산림기사, 식물보호기사, 임업종묘기사, 조경산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조경기능사,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종자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산림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영선	▶ (필수) 다음 중 하나 이상 자격에 해당되는 자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방수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미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조적기능사, 타일기능사
유의사항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함. • 자격증(취업지원대상자 등)의 경우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해야함(취득(등록)일자 확인)		

7

응시원서 접수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접수기간	▶ 2025. 11. 13.(목) 09:00 ~ 11. 20.(목) 18:00한 <8일간> ※ 접수마감일 18:00에 채용사이트 자동 마감	
접수방법	▶온라인 입사지원사이트 접속 후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채용사이트주소	▶ https://www.uic.or.kr/recruit/	

8

시험 가산특전

구분	임용 직급	가 산 범 위(자격증) 및 등 급	가산 비율	비 고
공통 분야	전 직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각 개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	5% ~ 10%	○가점은 필기시험 각과목별 만점을 기준으로 함 ○공통분야 가산점 1개, 분야별(행정.기술) 자격증 1개를 각각 합산 인정함 (다만, 각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행정 분야	일반직 4급 이하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5%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자에 한함(개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제외)
기술 분야	일반직 4급 이하	기술사	5%	
		기 사	3%	
유의 사항		▶증빙서류가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지원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지청)에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개별 법령에 따라 가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 ▶행정분야 및 기술분야 가산점은 일반직에 한함.		

9

응시자 제출서류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제출서류	▶(공통) 응시자격요건 증빙서류(초본, 자격증, 졸업증명서 등) ※초본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요망 ▶가산점 증빙서류 각 1부								
	<table><tr><th>구분</th><th>증빙서류</th></tr><tr><td>취업지원대상자</td><td>·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td></tr><tr><td>장애인</td><td>·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td></tr><tr><td>북한이탈주민</td><td>·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td></tr></table>	구분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구분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방법	▶채용사이트 입사지원서 작성 시 스캔본 파일 첨부(업로드)								
유의사항	▶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격여부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소지, 자격증 보유여부, 경력(경험)사항, 해당기간(정확한 연월일) 등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블라인드 채용진행을 위하여 응시지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가산 대상자격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함(공고일 전일까지 등록되어야 함) ▶기타 경력(경험)기간 산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함 ▶추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								

10

근무조건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정년	▶만 60세 ※ 시용근무(입사 후 3개월 이내)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근무시간	▶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근무(당직)표에 따라 (공)휴일 및 야간 등 근무할 수 있음	
근무장소	▶울산시설공단 관리시설	
보수 등	▶기본급 및 그 외 수당 등은 공단 사규(취업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름 ※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열린경영-공단사규)에 상시공개	

11

예비합격자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일반사항	▶ 예비합격자는 합격 유효기간 중 해당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채용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원된 인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향후 채용 예정 등의 특별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선발사유	▶ 당해 시험 임용예정자의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당해 시험 채용절차 종료 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 당해 최종채용 후 유효기간 내 중도 퇴사하는 경우	
예비합격 유효기간	▶ 당해 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시용기간과 동일	
예비합격자	▶ 해당분야 최종시험 성적 차점자 1배수 ▶ 동점자 발생시 우선 순위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자 ③ 면접결과 미흡 평정이 적은 자	
기타사항	▶ 공단 사정상 추가채용이 없을 수도 있음	

12

유의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일반사항	▶ 지원서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 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규정위반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반드시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람	
마감시간 오류	▶ 원서접수 마감일 및 마감시간 임박해서는 지원자가 몰려 입사지원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시간을 가지고 지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은 지원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이의신청	▶ 응시자를 대상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오니 첨부 '채용시험 이의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정규임용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 후, 평가를 거쳐 정규임용	
야간 및 휴일근로	▶ 최종합격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 확인 후 반환함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공정채용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청탁을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수 있음	
합격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	
미채용	▶ 우리공단의 채용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13

기타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편의사항	▶ 시험장소 출입 및 보행에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장애인 등 응시자께서는 사전 또는 당일 채용담당자(☎052-290-7333)에 연락 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공고	▶ 추후 전형절차 진행에 따른 시험장소, 세부일정, 합격자명단, 임용구비서류 등 모든 사항은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함(개별 연락 없음)	
친인척 공개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공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현황을 공단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단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해야 함	
임용일 조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감염병 증상자에 대해서는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이 공고문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 채용담당자(☎052-290-7333)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